



통권 491호

2024 | 07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난 6월 12일 법학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며 상담소 창설자인 이태영 선생님의 뜻을 기려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을 '이태영홀'로 명명하는 '이태영홀 현판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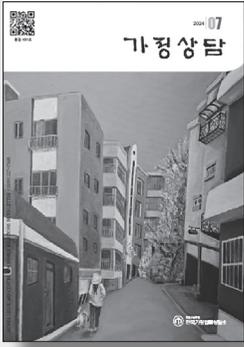
현판식은 찬송과 기도, 성경봉독에 이어 상담소에서 제작한 '이태영 박사 가 걸어온 길' 동영상 시청이 있었으며 현판식 준비 경과보고, 김은미 총장의 인사말씀 그리고 제자 대표로 신인령 전 총장과 곽배희 상담소 소장의 말씀이 있었으며 가족대표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감사말씀이 있었고 이어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관련 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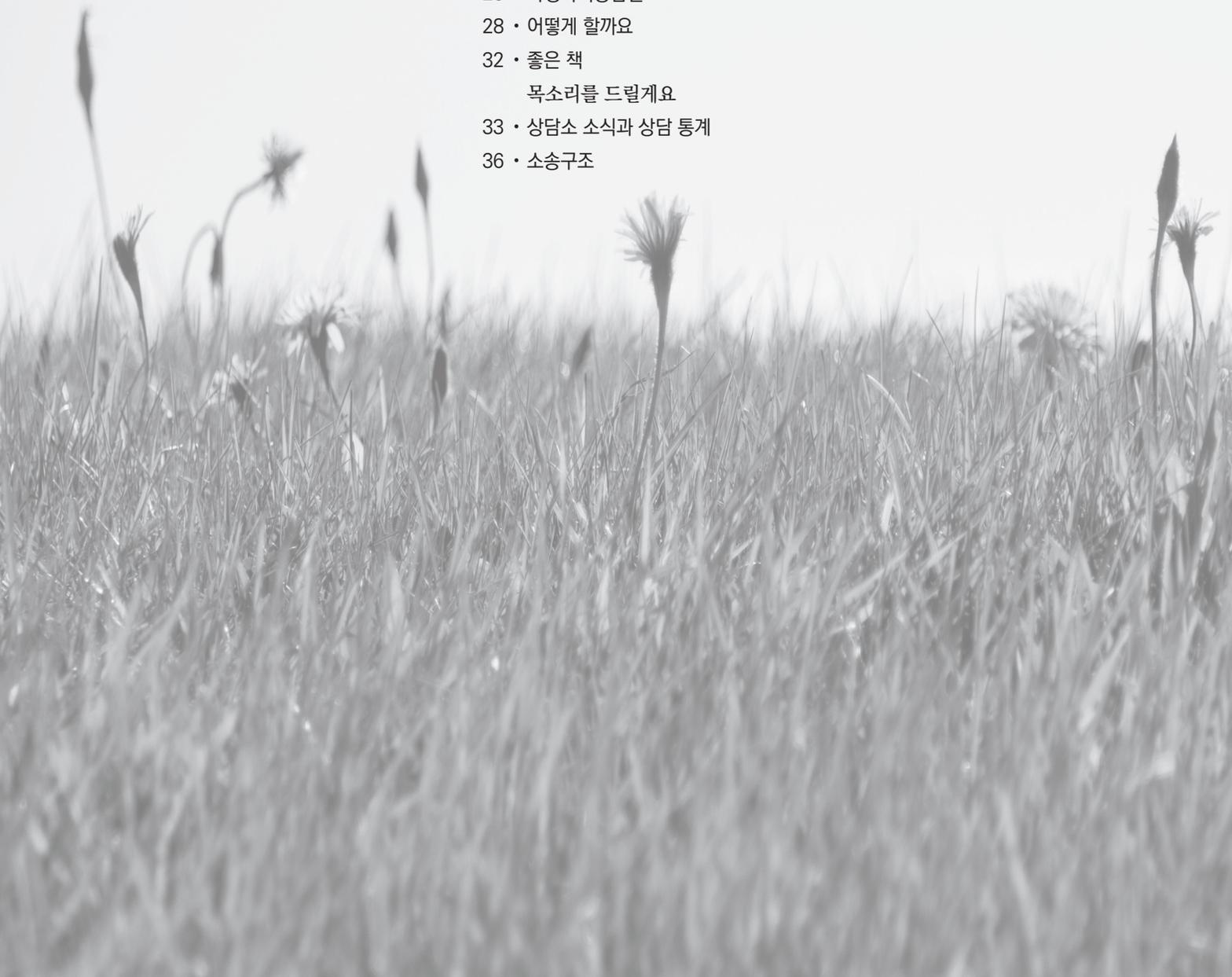
- 부 : 부패는
- 패 :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 방 : 방심하지 말고
- 지 :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legalaidcenter>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상담통계 - 가정폭력 행위자
- 20 · 특별기획 | 동지교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⑤
- 23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⑥ · 끝
- 25 · 가정폭력상담실
- 28 · 어떻게 할까요
- 32 · 좋은 책
 목소리를 드릴게요
-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진정한 성찰이 필요한 때 -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구해야

개인과 가정, 사회와 정부 모두 마음을 모아 (2)

지난 호 <가정상담>에서 최근의 이별 관련 범죄에 대해 언급했던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들려올 무렵,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매장이 생겨나면서 “노키즈존” 논란도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두 십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안전이별이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듯이 노키즈존 또한 어린이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 모두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기분을 최우선으로 삼고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숙한 인격, 공공장소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태도조차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남 탓을 하는 보호자가 논란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러한 많은 논란과 문제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개인과 가정, 사회적 윤리의 부재, 문화지체에서 비롯되며, 상담소에서 한국 가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벌어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급격한 핵가족 사회로의 진전에 과거의 윤리는 무너지고 새로운 윤리와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소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을 살피던 저는 언제나 극단적인 ‘가족이기주의’의 출현을 걱정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안전이별의 가해자, 노키즈존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공간을 만들어 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이 나아가 사회 전반이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음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논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더 늦기 전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만큼 가정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인 상담소는 본연의 업무인 법률구조사업과 함께 가정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정 문제 상담과 동시에 가족법 개정운동과 가족구성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도 선구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즉 가정 문제 상담을 하다 보니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간절했고 아울러 가족구성원의 의식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한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상담소에서는 가족구성원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평등을 실천하는 올바른 가족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교육 사업으로 일찍이 어머니 학교,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결혼 전 교육, 이혼 전 교육 등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육사업이 어느 정도 가족구성원의 의식개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되자 상담소는 다시 본연의 목적사업인 법률구조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 후 사회 곳곳에 이를 실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생겨났고 상담소는 본연의 업무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우리 가정, 사회의 위태로운 모습은 언제나 한발 앞서 가족구성원의 변화하는 생각을 읽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 온 상담소의 예측조차 벗어나 있습니다. 물론 상담소의 역량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한경쟁으로 표현되는 과도한 입시경쟁, 모든 것이 자본의 힘으로 귀결되는 사회상은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조차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 비싼 대가를 지금부터 그리고 어찌면 다음 세대가 더 처절하게 치러야 할 지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살아갈 사회, 자녀와 더불어 살아갈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만큼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이 그러합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대가족 사회가 이렇게 빨리 산업화, 도시화 된 핵가족으로 진전한 예는 세계사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미 그 핵가족도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가족구성원이 제가꿈 문화지체를 겪고 있으니 바람직한 가족문화나 윤리의 내재화 그리고 올바른 발전과 계승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이 모든 변화의 부작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의 문제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담소가 법과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의식화 교육에 나섰던 것은 결국 모든 문제의 귀결은 사람에게 닿아 있어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사람의 의식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스스로 인권을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 간절한 마음과 행동이 뒤따를 때 비로소 평등한 가족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아이만, 우리 가족만 별도로 잘 사는 세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위험한 장난을 치는 아이에게 주의를 주면, 부모가 화를 낸다고 합니다. 부모가 주의를 준 이에게 고마움을 표할 때, 그 자녀는 제대로 자랄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만큼 다른 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우리 모두 인권과 인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먼저 가르치고 그러한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결국은 서로 차별하고 배제하며 소외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그 안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 모두가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회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가정 문제에 대해 가장 넓고 깊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상담소가 우리 가정을 위해 그간의 역사와 경험을 기반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가정폭력,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아

- 30~40대 남성 행위자가 51.5%로 다수 차지
- 동거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부부, 육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 발생 많아
- 2022년에 비해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에게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 증가해, 이는 극단적인 분노조절 실패로 볼 수 있어

I. 들어가는 말

본 상담소는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행위자 총 370명을 수탁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¹⁾ 2022년에 위탁받아 2023년까지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 306명을 포함하면 2023년에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는 모두 676명이었으며, 이 중 524명은 2023년에 상담을 종료하였다. 이하에서는 2023년에 상담이 종료된 524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항목별 분석 내용

1) 사건 관련

① 수탁 법원

2023년에 상담이 종료된 524명을 수탁한 법원을 살펴보

면, 서울가정법원이 98.9% (518명)로 가장 많았다.

법원명	구 분	수(명)	백분율(%)
서울가정법원		518	98.9
수원가정법원		4	0.7
광주가정법원		1	0.2
전주지방법원		1	0.2
합 계		524	100

2)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0~40대 남성 행위자가 51.5%로 다수 차지
-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아
- 부부의 경우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6.1%로 가장 많아, 육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 발생 많아

① 남녀별

행위자 524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374명(71.4%), 여

1) 구체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365명, 수원가정법원 2명, 인천가정법원 1명, 광주가정법원 1명, 전주지방법원 1명을 포함하여 총 370명을 2023년에 수탁받았다.

성이 150명(28.6%)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80명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여성 행위자 150명 중 120명(80%)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 또는 생존의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성	374	71.4	154	29.4
여성	150	28.6	370	70.6
합계	524	100	524	100

②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29.4%(15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2.1%), 50대(21.4%) 순으로 나타났다.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46.1%(185명)과 비교하였을 때 51.5%(270명)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피해자의 경우는 30대가 27.5%(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26.9%),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1	0.2	3	0.6
20대	42	8.0	66	12.6
30대	116	22.1	144	27.5
40대	154	29.4	141	26.9
50대	112	21.4	85	16.2
60대	82	15.6	69	13.1
70대	16	3.1	13	2.5
80대 이상	1	0.2	3	0.6
합계	524	100	524	100

③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각 39.1%(205명)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는 고등학교 졸업이 41.2%(21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9.1%(205명)로 나타났다.

구분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25	4.8	26	5.0
중졸	41	7.8	29	5.5
고졸	205	39.1	216	41.2
전문대졸	27	5.2	32	6.1
대졸	205	39.1	205	39.1
대학원이상	21	4.0	16	3.1
합계	524	100	524	100

④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9.9%(15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23.7%(124명), 단순노무 20.8%(109명) 순이었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2.4%(17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23.3%(122명)을 차지했다.

구분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부	58	11.1	170	32.4
회사원	157	29.9	122	23.3
단순노무	109	20.8	69	13.2
자영업	124	23.7	80	15.3
교육직	4	0.8	9	1.7
전문직	6	1.1	5	1.0
학생	2	0.4	18	3.4
공무원	3	0.6	400	0.8
무직	61	11.6	47	8.9
합계	524	100	524	100

⑤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5.4%(133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3.1%(121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5.2%(237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월 수입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19	3.6	8	1.5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9	7.4	57	10.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0	19.1	83	15.9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33	25.4	82	15.6
500만원 이상	121	23.1	57	10.9
일정한 수입이 없음	112	21.4	237	45.2
합계	524	100	524	100

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법률혼 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가 422명으로 80.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성인자녀 관계인 경우가 15.1%(79명)로 나타났다.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 이외에도 이혼부부, 남매관계, 형제관계, 자매관계, 조손관계 등 다양한 가족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구분 \ 관계	구분	수(명)	백분율(%)
부부관계	법률혼 부부	353	67.3
	사실혼 부부	69	13.1
부모-자녀 관계	부모-성인자녀 관계	79	15.1
	부모-미성년자녀 관계	3	0.6
기타 가족관계	이혼 부부	5	1.0
	남매 관계	9	1.7
	형제 관계	2	0.4
	자매 관계	3	0.6
	조손 관계	1	0.2
합계		524	100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422명)에 부부 일방 또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 9.7%(41명)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 11.5%(37명)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외국인 행위자는 총 22명으로 이들의 본국은 중국이 68.2%(1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베트남이 13.7%(3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피해자는 총 28

명으로 이들의 본국 역시 중국이 57.1%(1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베트남이 21.3%(6명)로 나타났다.

본국 \ 구분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중국	15	68.2	16	57.1
베트남	3	13.7	6	21.3
대만	2	9.1	1	3.6
러시아	1	4.5	1	3.6
미국	1	4.5	1	3.6
멕시코	-	-	1	3.6
싱가포르	-	-	1	3.6
칠레	-	-	1	3.6
합계	22	100	28	100

⑦ 혼인형태별²⁾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3.4%(310명)로 가장 많았다.

혼인 형태 \ 구분	수(명)	백분율(%)
(남)초혼-(여)초혼	310	73.4
(남)재혼-(여)초혼	15	3.6
(남)초혼-(여)재혼	30	7.1
(남)재혼-(여)재혼	67	15.9
합계	422	100

⑧ 동거기간별³⁾

1년 이상 5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순으로 폭력발생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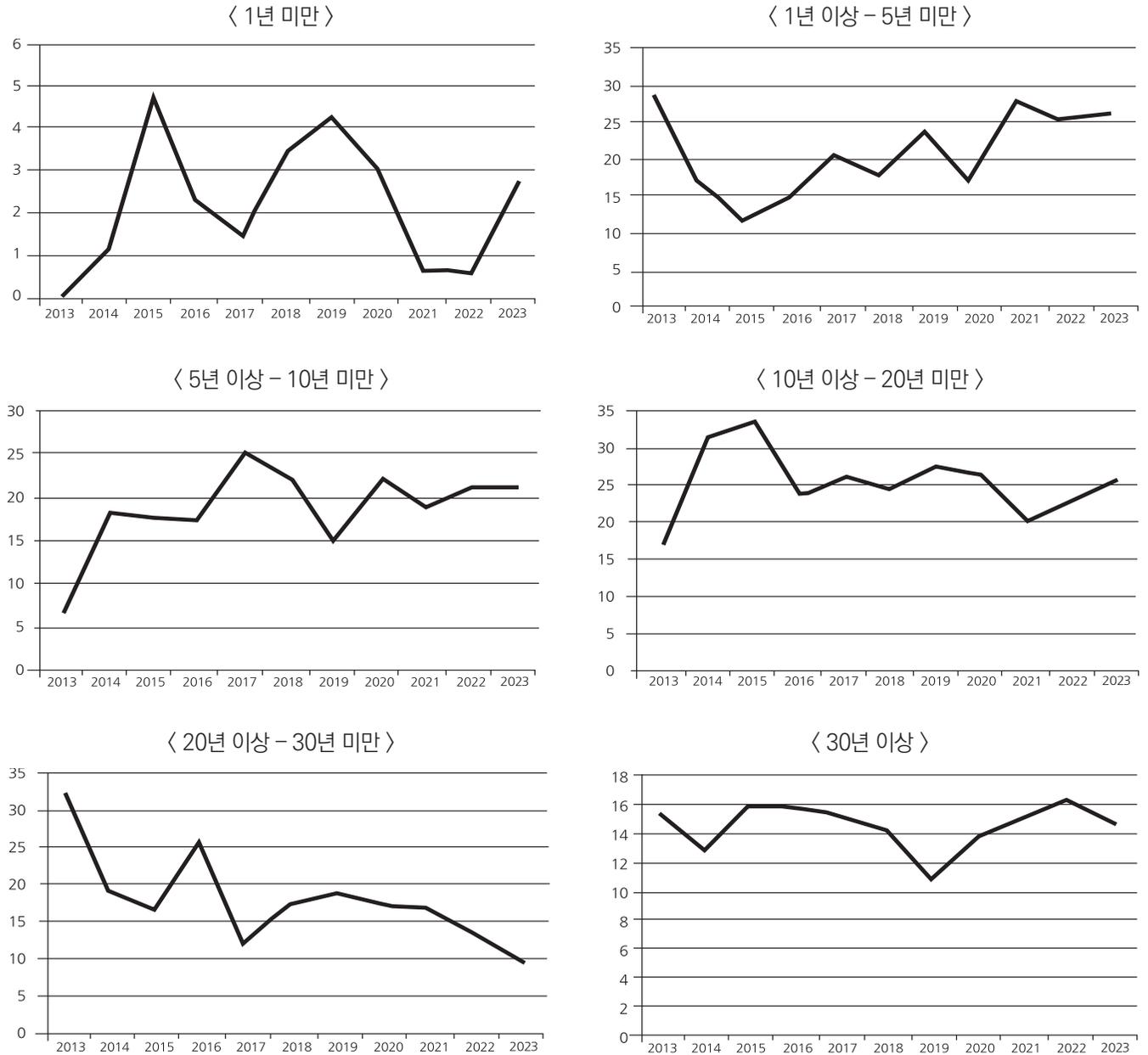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6.1%(110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2년 25.1%(81명)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증가하였다. 다른 기간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은 부부 110명 중 63명(57.3%)⁴⁾이 육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가

2)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422명)에 국한하였다.

3)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422명)에 국한하였다.

4)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 그림 1. 2013년-2023년 최근 10년간 동거기간 추이 분석 〉



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 머물러 있는 남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동거기간이 짧더라도 행위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통제와 제압을 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반면, 피해자는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

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5.8%(109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2년 23.1%(74명)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증가하였다.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부부 109명 중 75명(68.8%)⁵⁾은 결혼기간에 축적된 갈등이 배우자와의 대화 또는 취미생활 공유 등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면서

5)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집안일과 관련된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시기는 자녀양육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부부 109명 중 35명(32.1%)⁶⁾은 자녀의 게임중독이나 비행 등 생활태도, 자녀의 학습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동 거 기 간	구 분	수(명)	백분율(%)
1년 미만		12	2.8
1년 이상 ~ 5년 미만		110	26.1
5년 이상 ~ 10년 미만		90	21.3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9	25.8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	9.5
30년 이상		61	14.5
합 계		422	100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2.7%로 가장 많아
- 아내의 남편폭력의 경우 남편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 부부간의 불신으로 인한 갈등으로 남편에게 폭력한 경우 많아
- 2022년에 비해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에게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 증가해, 이는 극단적인 분노 조절 실패로 볼 수 있어

①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2.7%(27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13.7%(72명)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11.6%(47명)에서 13.7%(72명)로 다소 증가하였고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은 6.5%(26명)에서 5.9%(31명)로 다소 감소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자녀폭력이 9.7%(51명)로 가장 많

았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자녀폭력이 8.5%(34명)에서 9.7%(51명)로 다소 증가하였다.

남편에게 폭력을 한 아내 72명의 폭력행사 이유를 살펴보면, 이들 중 40명은 남편의 과거 외도 또는 현재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폭력적인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형	구 분	수 (명)	백분율 (%)
부부 관계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276	52.7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48	9.2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72	13.7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	31	5.9
부모-자녀 관계	자녀폭력	51	9.7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대한 부모의 맞대응	5	1.0
	부모폭력	26	4.9
기타 가족 관계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	7	1.3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에 대한 누나의 맞대응	2	0.4
	동생에 의한 형폭력	2	0.4
	동생에 의한 언니폭력에 대한 언니의 맞대응	2	0.4
	동생에 의한 언니폭력	1	0.2
	손자에 의한 조부모 폭력	1	0.2
합 계		524	100

②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8.9%(518명)로 가장 많았다.

폭 력 수 준	구 분	수(명)	백분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518	98.9
1주 이상 ~ 5주 미만		6	1.1
합 계		524	100

③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폭행'인 경우가 54.8%(287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6)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폭력 수준	구 분	수(명)	백분율(%)
	폭행	287	54.8
	특수협박	34	6.5
	특수폭행	28	5.3
	폭행, 재물손괴	25	4.8
	재물손괴	20	3.8
	폭행, 특수협박	20	3.8
	존속폭행	15	2.8
	상해	14	2.7
	협박	9	1.7
	특수상해	6	1.1
	폭행, 협박	5	0.9
	특수재물손괴	5	0.9
	특수협박, 재물손괴	4	0.7
	특수협박, 특수폭행	4	0.7
	재물손괴, 협박	4	0.7
	특수폭행, 폭행	3	0.6
	보호처분집행감독	3	0.6
	상해, 폭행	2	0.4
	존속상해	2	0.4
	폭행치상	2	0.4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2	0.4
	특수폭행, 재물손괴	2	0.4
	폭행, 특수폭행, 특수협박	2	0.4
	특수재물손괴, 폭행	2	0.4
	특수존속폭행	2	0.4
	폭행, 재물손괴미수	2	0.4
	특수존속협박	2	0.4
	감금, 특수협박	2	0.4
	상해, 재물손괴	1	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재물손괴)	1	0.2
	존속폭행, 폭행	1	0.2
	존속폭행, 재물손괴	1	0.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1	0.2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1	0.2
	재물손괴, 폭행, 협박	1	0.2
	폭행, 감금	1	0.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1	0.2
	상해, 특수협박	1	0.2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1	0.2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1	0.2
	주거침입, 특수존속협박	1	0.2
	폭행, 재물손괴, 감금	1	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0.2
	체포	1	0.2
	합 계	524	100

2022년 51.5%(206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특수협박’이 6.5%(34명)로 많았고 이는 2022년 3.7%(15명)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중단하자 메신저를 통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 및 동료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0.2%, 1명), 신체 폭력과 함께 피해자를 방안 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경우(0.4%, 2명), 컴퓨터 등의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경우(0.4%, 2명) 등 다양한 종류의 폭력행위가 있었다.

④ 폭력행위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통제 행동, 성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폭력 행동은 법원에서 접수한 보호처분결정문에 첨부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34개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폭력 행동이 있으면 가해 경험으로 산출하였다.

행위자 모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는 정서적 폭력 행사해

2022년에 비해 피해자 앞에서 자해·자살 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4배 이상 증가

첫째, 정서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 524명 모두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는 정서적 폭력을 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피해가 가시적이거나 즉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어폭력으로 야기되는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항 목	폭력행동 유무	
	없음(%)	있음(%)
정서적 폭력	-	524(10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524(100.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304(58.0)	220(42.0)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308(58.8)	216(41.2)
4. 피해자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384(73.3)	140(26.7)
5.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379(72.3)	145(27.7)
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367(70.0)	157(30.0)
경제적 폭력	469(89.5)	55(10.5)
7.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472(90.1)	52(9.9)
8. 피해자의 재산 또는 피해자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없이 처분하였다.	475(90.6)	49(9.4)
9.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473(90.3)	51(9.7)
10.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	474(90.5)	50(9.5)
통 제	434(82.8)	90(17.2)
11.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458(87.4)	66(12.6)
12.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462(88.2)	62(11.8)
13.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했다.	456(87.0)	68(13.0)
14.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466(88.9)	58(11.1)
15. 바람을 피운다고 자주 의심하고 비난했다.	450(85.9)	74(14.1)
16.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했다.	472(90.1)	52(9.9)
17.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461(88.0)	63(12.0)
18. 사회활동(직업갯기, 교육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460(87.8)	64(12.2)
19. 외출시간, 귀가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457(87.2)	67(12.8)
20.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했다.	518(98.9)	6(1.1)
성적 폭력	514(98.1)	10(1.9)
21.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강요했다.	517(98.7)	7(1.3)
22.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516(98.5)	8(1.5)
2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했다.	515(98.3)	9(1.7)
24.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없이 촬영했다.	519(99.0)	5(1.0)
25.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없이 유포했다.	521(99.4)	3(0.6)
경미한 신체적 폭력	109(20.8)	415(79.2)
26.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383(73.1)	141(26.9)
27.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181(34.5)	343(65.5)
28.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212(40.5)	312(59.5)
심한 신체적 폭력	150(28.6)	374(71.4)
29.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319(60.9)	205(39.1)
30. 피해자를 물건(현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468(89.3)	56(10.7)
31.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325(62.0)	199(38.0)
32. 피해자 목을 졸랐다.	443(84.5)	81(15.5)
33.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403(76.9)	121(23.1)
34.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417(79.6)	107(20.4)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함이 더욱 큰 상처로 남는 폭력이라고 호소하면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에 행위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행위자들은 상담처분을 이행하면서 신체적 폭력만으로 이해하였던 폭력의 정의를 상대방의 정서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언어 및 정서적 폭력,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재물손괴도 폭력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는 등 폭력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적 폭력 중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42%(220명)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5.8%(63명)에 비해 그 비율이 2.7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2013년 8.5%(5명)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경우’는 41.2%(216명)로 2022년 29.8%(119명)에 비해 1.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2013년 10.2%(6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 또는 가정 내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가정폭력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제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통제욕구에 기인하여 다양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있었다.

이외 정서적 폭력 중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한 경우’는 2022년 6.8%(27명)에 비해 27.2%(145명)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관계 내에서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서적 학대의 전략일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부부관계(117명)에서는 행위자인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피해자인 아내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87명). 그리고 부모자녀관계(22명)에서도 자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14명).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 많아

둘째, 경제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폭력을 한 경우는 10.5%(55명)로 2022년 8.8%(35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가 9.9%(52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부부가 의논하여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생활비 지출, 자녀양육이나 교육,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문제 및 재산관리를 행위자(주로 남편)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경제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제압하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등 성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공유를 통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족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는 통제행위 많아

셋째,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제의 유형에서는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14.1%(74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12%(48명)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비난하며 더 나아가 관리하고 감시하려는 통제 행위는 직접적인 폭력행위 없이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부간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은 삼가해야

넷째, 성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적 폭력을 한 경우는 1.9%(10명)로 나타나 그 비율이 높지는 않았으나, 부부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가 1.7%(9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집에서 따로 방을 쓰면서 부부간 유대관계가 소홀해져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하거나 근거없는 의심을 하면 성적으로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를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경미한 신체적 폭력 가장 많아

다섯째,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한 경우는 79.2%(415명)로 나타나 2022년 71%(28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경우’가 65.5%(343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22년 47.3%(189명)에 비해 1.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를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행위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하거나, 자신을 흔계하려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거나 밀쳐낸 것뿐이라며 자신의 폭력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에 비해 피해자에게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심한 신체적 폭력 증가해

여섯째, 심한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1.4%(374명)로 나타나 2022년 61.5%(246명)에 비해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39.1%(205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2년 36.7%(147명)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38%(199명)로 많았는데, 이는 2022년 25%(100명)에 비해 그 비율이 1.5배 이상 증가하

였다.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뛰어넘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분노조절 실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외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두른 경우’는 20.4%(107명)로 2022년 11.5%(46명)에 비해 1.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분노조절에 실패한 행위자의 폭력이 더욱 심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었다.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폭력행사 이유 :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 부부간 불신
→ 경제갈등 순

행위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불평등한 가치관 강화시키고,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① 폭력행사 이유

행위자가 상담위탁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행사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9.8%, 551건), 부부간 불신(14.5%, 202건), 경제갈등(11.8%, 164건) 순으로 나타났다.⁷⁾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9.8%, 551건)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켜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는 우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내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약자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피해자가 밝은 색 옷과 어두운 색 옷을 분리해서 바구니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피해자가 아침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며칠 전에 주문한 가

7)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구가 배달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에게 물었는데 짜증내면서 대답했다고’, ‘피해자가 다른 가족에게 자신의 힘담을 했다고’, ‘피해자에게 김치를 담가달라고 했는데 힘드니까 사 먹으라는 답변을 했다고’, ‘자신의 작업복을 세탁해두지 않았다고’, ‘자신이 쓰는 이발기기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하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애 엄마가 아이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다고’, ‘식사를 하던 중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이틀 된 밥을 주었다고’, ‘집에 있으면서 집안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육아문제와 자녀양육 방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119건, 8.6%).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기대하는 아내와 가사노동이나 육아분담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75건, 5.4%). 아동 및 청소년기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학업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생활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44건, 3.2%).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14.5%, 202건)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잦은 회식자리 참석과 늦은 귀가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가 연락없이 늦게 귀가한 것이 못마땅하여’, ‘조금 떨어져 자라고 한 말에 남자 문제를 의심하여’, ‘길거리에서 다른 남성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밤늦게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없이 외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과거 또는 현재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을 폭력한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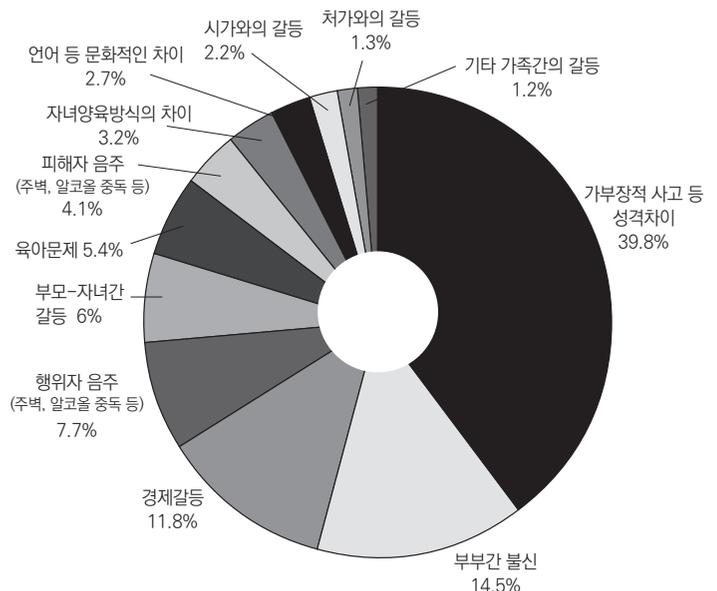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은 경제갈등(11.8%, 164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실직 이후 빚이 증가하여 가정경제가 더 빈곤해지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수입과 지출을 피해자와 공유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을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폭력사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부부간 경제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불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 통제를 가하는 것 등이 경제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구 분	수(건)	백분율(%)
폭력행사 원인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551	39.8
부부간 불신	202	14.5
경제갈등	164	11.8
행위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107	7.7
부모-자녀간 갈등	83	6.0
육아문제	75	5.4
피해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56	4.1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44	3.2
언어 등 문화적인 차이	37	2.7
시가와의 갈등	30	2.2
처가와의 갈등	19	1.3
기타 가족간 갈등	16	1.2
합 계	1,384	100



〈 그림 2. 폭력행사 이유 〉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피해자 등 상담 병행 69.1%

행위자 중 69.3%가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① 상담대상자별

법원에서 피해자 상담을 병행하도록 결정한 경우는 44.9%(230명)에 달했는데, 이는 2022년 55.3%(221명)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담 욕구와 동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소에서는 행위자 상담시 가능한 전체 피해자에게 상담의사를 타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을 함께 상담한 경우가 69.1%(362명)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처분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구분	수(명)	백분율(%)
상담대상자		
행위자 본인상담	162	30.9
행위자 본인·배우자·기타 가족상담	362	69.1
합계	524	100

② 상담방법별

2023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대면상담이 어려웠던 코로나 19 이후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및 대면상담을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역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23년도에는 3,903건의 개별상담, 327건의 부부상담, 94건의 가족상담이 실시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주문제 상담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23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6회로 212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6회로 81명이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수요일 총 50회 실시되었으며, 총 249명이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동지교실」은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총 12회의 교육강좌가 실시되었고 총 618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부부 캠프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6개월의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 인식에 대한 재검토 및 부부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3년도에는 총 524명의 행위자가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3년도에는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총 21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329명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정신과 치료연계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여성 11명에게 총 129회에 걸쳐 진료 및 상담, 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상담 프로그램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유연하게 진행한 결과, 2023년에 상담이 종료된 524명 중 69.3%(363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상담 방법	구 분	수(명)	백분율(%)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161	30.7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교육프로그램		25	4.8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집단상담		140	26.7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교육프로그램 · 집단상담		198	37.8
합 계		524	100

5)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 :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의 폭력중단

부부는 상담종료 이후 58.8%가 화해 · 동거

① 부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422명의 상담 종료시 폭력재발 여부 및 관계회복 여부를 살펴보았다.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99.1%(418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폭력이 재발된 4명은 상담위탁처분이 6개월 기간연장되어 폭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폭력의 재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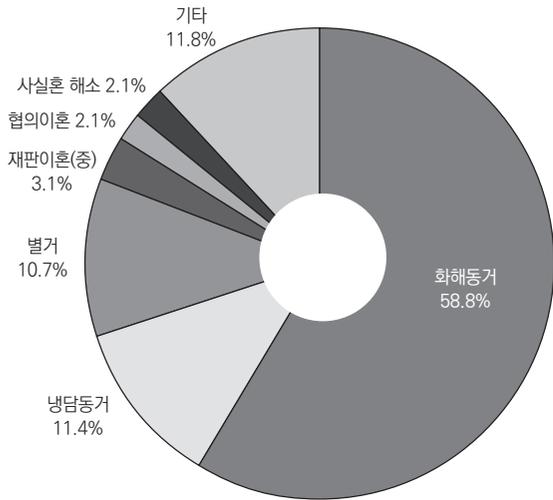
구 분	수(명)	백분율(%)
폭력재발 없음	418	99.1
폭력재발 함	4	0.9
합 계	422	100

나. 부부관계 회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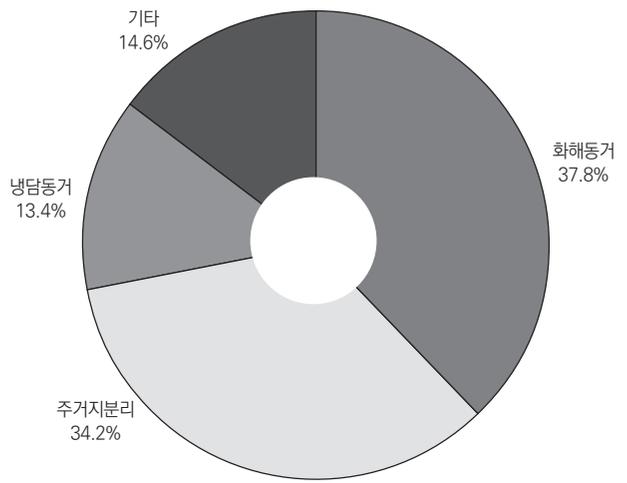
부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8.8%(248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수(명)	백분율(%)
화해 · 동거	248	58.8
냉담 · 동거	48	11.4
별 거	45	10.7
재판이혼(중)	13	3.1
협의이혼	9	2.1
사실혼 해소	9	2.1
기 타 ⁸⁾	50	11.8
합 계	422	100

8) 기간연장(3.3%, 14명), 보호처분 변경(6.4%, 27명), 보호처분 취소(1.2%, 5명), 보호처분 경정(0.9%, 4명) 등을 포함하였다.



〈 그림 3.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



〈 그림 4. 상담종료시 부모자녀관계 〉

② 부모자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82명),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

구분	수(명)	백분율(%)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 여부		
폭력재발 없음	100	100
폭력재발 함	0	0
합 계	82	100

나. 부모자녀관계 회복 여부

부모자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37.8%(31명)으로 많았다.

구분	수(명)	백분율(%)
상담종료 후 부모자녀관계		
화해·동거	31	37.8
주거지 분리	28	34.2
냉담·동거	11	13.4
기 타 ⁹⁾	12	14.6
합 계	82	100

III. 맺음말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등으로 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상담을 종료한 행위자는 총 524명이었다.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의 중요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374명(71.3%), 여성이 150명(28.6%)로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여성 행위자 150명 중 80명(80%)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보면 남편의 폭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쌓였던 분노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한 ‘폭력’을 방어 내지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29.4%(15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2.1%), 50대(21.4%) 순으로 나타났다.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46.%(185명)과 비교하였을 때 51.5%(270명)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셋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26.1%, 110명), 10년 이상 20년 미만(25.8%, 109명), 5년 이상 10년 미만(21.3%, 90명) 순으로 폭력발생이 많았다.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다른 기간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은 부부 110명 중 63명(57.3%)¹⁰⁾이 육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9) 기간연장(3.7%, 3명), 보호처분 변경(6.1%, 5명), 보호처분 취소(2.4%, 2명), 피해자 사망으로 보호처분 종료(2.4%, 2명) 등을 포함하였다.

10)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동거기간이 짧더라도 행위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통제와 제압을 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반면, 피해자는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폭력의 유형으로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2.7%(276명)로 가장 많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배우자인 남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13.7%(72명)로 많았는데 이들의 폭력행사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남편의 과거 외도 또는 현재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40명).

다섯째,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는 ‘폭행’이 54.8%(287명)로 가장 많았지만, ‘재물손괴’와 ‘협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가정폭력사건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한편 2022년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중단하자 사내 메시지를 통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 및 동료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신체 폭력과 함께 피해자를 방 안 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경우, 컴퓨터 등의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경우 등 다양한 종류의 폭력행위가 있었다.

여섯째, 행위자 524명 모두가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한 경우’는 2022년 6.8%(27명)에 비해 27.2%(145명)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관계 내에서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서적 학대의 전략일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부부관계(117명)에서는 행위자인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피해자인 아내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87명). 그리고 부모자녀관계(22명)에서도 자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14명).

일곱째,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한 경우는 79.2%(415명)로 나타나 2022년 71% (28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경우’가 65.5%(343명)로 가장 많았다. 한편 심한 신체적 폭력을 한 경우는 71.4%(374명)로 나타나 2022년 61.5%(246명)에 비해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39.1%(205명)로 가장 많았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두른 경우’는 20.4%(107명)로 2022년 11.5%(46명)에 비해 1.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분노조절에 실패한 행위자의 폭력이 더욱 심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었다.

여덟째,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9.8%, 551건), 부부간 불신(14.5%, 202건), 경제갈등(11.8%, 1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켜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는 우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내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약자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아홉째,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경우(422명) 99.1%(418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고,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8.8%(248명)로 가장 많았다. 본소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차연실 상담위원

특별기획

가정폭력예방 지침* 동지교실 VIII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5)

제 3 강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 INTRODUCTION

기분장애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 오늘은 여러 종류의 기분장애에 대해 배우며 나를 비롯한 가족들의 기분 상태를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OINT

1. 서론

DSM-5라는 미국의 정신과 진단분류편람에서 최근 세 가지의 우울장애가 추가로 포함되게 되었다. 하나는 파괴적 기분조절장애이다. 예전에는 감정조절이 힘든 아이들에

게 조울증 진단을 내렸는데, 추적 관찰결과 성인이 되었을 때 우울장애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롭게 우울증 범주의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속적 우울장애이다. 과거 만성 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 진단이 합쳐진 것으로 2년 이상 지속해서 기분이 가라앉아 우울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월경전 불쾌장애가 있다. 현저한 정서적 불안정성과 분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월경전주에 앞선 증상과 함께 우울장애 양상과 신체증상(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처럼 다양한 우울장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2. 본론

우울감과 병적인 우울증은 어떻게 구분할까? 정상적인 우울감은 이유가 있다. 기대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실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동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동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때나 좌절을 겪을만한 이유가 있으며, 짧은 기간 안에 가벼운 슬픔을 느끼는 정도이다. 이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일을 포기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병적인 우울증은 한번 우울장애가 발병하면, 그 이후부터는 원인도 맥락도 없이 슬프고 최소 2주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죄책감이 찾아오고 심하면 환청이나 망상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우울증은 학업이나 직업, 가정 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정상 범위 내에서 감정의 진폭이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우울증은 계속 다운되어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DSM-5 진단 기준상 증상이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흥미감소의 필수증상을 포함해 다섯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나이에 따라서 우울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소아 청소년의 경우 짜증과 반항, 등교 거부 혹은 성적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우울증은 겉으로는 무기력해 보이거나 속에는 분노와 화가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년 여성으로 넘어갈 경우, 갱년기 증상과 혼동되는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 수면장애가 같이 일어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하기도 한다. 특히 폐경기를 앞둔 여성의 3분의 1은 우울 증상이 공존해 나타나기도 한다. 중년 남성의 우울증은 외부도움요청을 거의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혼자 힘겨워하다 극단적인 문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중년 남성들은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관계가 협소해지고, 외로움과 내면의 고통을 솔로 해결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노인들 역시 불면, 불안과 동반된 우울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급격히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우울증은 유전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때도 많다. 가족 내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우울증을 겪을 경우가 상당히 높다. 또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뇌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나쁜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과 생각, 행동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사람들은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고, 불면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뇌의 신경전달물질이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 통증을 많이 겪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의 뇌는 정상적인 사람과 다르게 위축되는 소견을 보이고, 이것이 집중력과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사례 2〉

우울장애는 가장 대표적인 우울증이다. 일상 활동의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체중의 감소/증가, 무가치감 증가, 집중력 감소, 우유부단함, 반복적 자살 생각을 특징으로 한다.

인구의 10% 이상이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다. 특히 여성의 10%~25%, 남성의 5%가 우울장애를 경험한다. 여성은 호르몬 계통의 변화나,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가부장제 문화로 인해 우울증을 남성보다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추론된다.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남성 우울증 유병률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는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 계속해서 슬픔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며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괴롭히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자신도 삶을 마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기도 한다.

자살과 우울장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살기도자의 70%는 정신질환(자살국면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자살의 근원적인 이유가 정신질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님), 그중 70%는 주요 우울장애에서 기인한다. 만성 질환에 우울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보통의 애도는 내면의 슬픔을 공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생을 잘 산 뒤 고인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건강한 애도(grief)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비애를 느끼고 삶의 무가치함을 느끼면 심리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 지속적 우울장애는 우울한 날이 더 많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예민하고 까칠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안절부절못하기도 한다. 불면이나 과다 수면이 동반되기도 한다. 통제력을 상실할까 봐 자신도 두려워하고, 각종 근육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한 우울장애의 50%는 첫 우울감을 겪기 전에 심각한 무기력 증세를 겪는다. 이러한 우울장애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잘하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우울장애는 보통 치료 시 3개월 정도는 지속하다가 안정기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재발이 잦기 때문에 운동과 상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충분히 치료가 됐을 때 주치의 판단아래 약물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 3〉

기분장애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은 상실이다. 예컨대 가족의 죽음이나 직업의 상실, 건강의 상실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고통을 외부로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고통을 함입하여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을 겪게 된다.

강박적 성격이나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질수록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의 길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들어서면 무엇을 생각하던 안 좋은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재앙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경향을 긍정적으로 바꿔야만 감정도 살아나고 행동도 원활히 될 것이다. 첫째, 자기에 대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둘째, 세상을 적대적이고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경향, 그리고 셋째, 자신이 고통과 실패를 겪으리라 생각하는 경향을 바꿔야 한다.

〈사례 4〉

여성의 6.8%에서 16.5% 가까이 산후 주요우울증(PMD)으로 산후우울증(PPD)을 경험한다. 다양한 호르몬 계통 변화 속에서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은 희망과 자존감을 잃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많이 하게 된다.

우울한 감정과 우울한 감정을 겪는 산모들은 자신이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나쁜 양육자로 낙인이 찍힐까 봐 제대로 자신의 우울증을 인정하지 못한다. 상담과 자조 모임을 통해서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자기표현도 하고 휴식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산후우울증은 반복성, 계절성 우울장애나 주요 우울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울증을 평가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사례 5〉

DSM-5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우울장애와 분리하여 독립된 진단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을 번갈아 겪는다. 조증 상태가 심할 때는 활력이 넘치고 기분이 들뜨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해 하지 않는다.

과도한 자신감, 전지전능함으로 활동이 과다해지고 쉽게 흥분하거나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잠을 적게 자도 괜찮고,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고, 아주 긍정적이고, 재치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람 중에 조울증을 겪는 이들이 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기분이 올라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우울증은 이 기분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우울한 것이고, 조울증은 정상 기분상태, 우울상태, 과도하게 감정이 고양되는 조증상태를 반복한다. 약하게 감정이 고양된 상태를 경조증 상태라 하는데, 조증처럼 심각하게 들뜨지는 않지만 평소보다 생산성이 높고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대개 우울상태로 떨어진다.

우울증과 높이 뜨는 조증을 보이는 것이 양극성 정동장애 제1형이고, 우울증과 경조증을 보이는 것이 양극성 정동장애 제2형이다. 가족 중에 양극성 조울증이 있으면 일반인 구보다 발병가능성이 8~18배 더 높게 관찰되는 경우가 있고, 정동장애이지만 조증상태에서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증적 증상(환청이나 망상)을 보이기도 한다. 조울증의 우울은 우울증의 우울과 차원이 다르다. 슬픔보다는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가깝다. 이 경우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바로 조증으로 증상이 바뀔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우울증으로 착각되어서는 안 되고 기분을 조절하는 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조울증은 한 번 발병하면 이후 자주 재발하고,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되는 경향이 크다. 사회적 기능장애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초기치료도 중요하고 지속적인 외래치료와 규칙적인 생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우울증, 산후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다양한 기분장애의 유형과 특성, 예후를 살펴보았다. 기분장애를 겪을 때 단순히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조그마한 증상이 있더라도 기분장애가 잘 치료되지 않으면 만성화와 재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심리 검사 등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자.

창립 50주년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새 회관 (5)

2007년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완공 및 입주
 2008년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 기념식

‘한 톨의 씨앗이 드넓은 꽃밭으로’ - 회관 신축 기념식

2008년 3월 26일 상담소의 새로운 회관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00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2005년 2월 여성백인회관 철거를 시작한 이후 34개월 만의 일이었다. 상담소 회관은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 기관인 상담소가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반세기를 위한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날 오후 4시 지하 2층 강당에서는 3백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소 회관 신축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기념식은 개회, 국민의례, 광배희 소장의 인사말, 회관 신축 과정을 담은 영상물 상영, 감사패 증정, 공로패 증정, 축사 및 축가, 정희성 시인의 축시 ‘겨자꽃 핀 봄날에’ 낭독과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경과보고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회관 신축에 각별한 도움을 준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사회봉사단, 금호아시아나그룹, SK텔레콤(주), (주)일건건축사사무소, 이화공영(주)에 본소를 대표하여 광배희 소장이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본소 이사회에서는 회관 건축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며 이사회를 대표한 차명희 이사장이 김춘봉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광배희 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다음 호부터는 상담소가 주도해 온 우리나라 가족법 개정운동사의 역사를 살펴보는 ‘가족법 개정운동사’를 게재한다

이어 각계를 대표하여 김경한 법무부 장관, 김원기 전 국회위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세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의 축사, 변도운 여성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하말씀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회관 신축을 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상담소 임직원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었다. 또한 이 회관을 기반으로 앞으로 상담소가 법률구조 사업, 법 개정 운동, 교육 사업 등 사업 전반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가정문제 전문 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며 우리 사회 성평등과 부부평등을 완전하게 실현하기를 기원하였다.

곽배희 소장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회관 준공의 의미

와 어렵고 힘들었던 건축 과정을 되새기면서 이 회관이 가난하고 법을 몰라 소외당하면서 변민하는 우리 이웃에게 따스한 도움을 드리는 사랑과 평화의 터전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편집부



부부 사이에 다양한 갈등 양상 드러나고 상호폭력도 늘어나
여러 가지 해결 방안 모색하되 폭력은 절대 하지 않기로

2021버1*** 폭행 / 2021버1***재물손괴,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8회, 집단상담 4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4회, 자조모임(집단상담) 7회(비대면 실시)
등 25회

상담기간

2021. 10. 22. ~ 2022. 5. 31.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1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남(12세)이 있다. 2021년 4월 사건당일 아들의 야구부 선수팀 입단비 문제로 언쟁하다 남편은 아내를 강제로 방 밖으로 내보낸 뒤 방문을 닫아버렸는데, 이에 아내가 집안 내에 있던 액자, 유리병, 의자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 재물손괴를 하고 이를 말리는 남편의 목과 팔, 어깨를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으며, 남편은 아내를 제지하며 손으로 아내의 양 손목을 잡아 팔을 아내의 목까지 끌어올려 짓눌러 목이 조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부부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위탁되었다.

남편은 사건 후 3일 동안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텔에서 3개월간 지내다 여동생 집에서 지내며 양육비를 아내에게 지급하고 있다. 남편은 사건 당일 아내가 시부에게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고 대든 점을 시부에게 사과하고, 남편과 시가 식구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랐다.

아내는 시부에게는 이미 전화로 용서를 구하였으며, 남편과 시가 식구를 무시하지 않았고, 지금은 부부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남편이 부부 중심으로 생각하는 변화가 있기를 바랐다.

부부는 별도로 상담에 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수용하기를 바랐다. 아내는 아내는 자조모임(집단상담)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에 다니며 아들을 돌보았다.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남편은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상담 도중 아내는 부인과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건강 회복과 아들 돌봄을 우선으로 하며 지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 모욕했고,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한다고 하면서 결합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혼 의사도 없었다. 부부 및 아들이 모두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감정을 더 이상 갖지 말기, 아버지 역할을 다하기 등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한편, 아내는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본소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타진하였다. 아내가 현재 남편 명의의 집에서 아들과 지내고 있으며(이혼할 경우 집을 재산분할하여야 함), 양육비가 잘 지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 회복 후 이혼을 검토하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교육강좌 4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집단상담 3회(비대면 실시)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4회

상담기간

2021. 11. 4. ~ 2022. 4. 28.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7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녀(7세)가 있다. 행위자는 2021년 4월 사건당일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5월 사건당일에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1년 가까이 지인 남성과 교제한 것을 확인하고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으나 숙려기간 중 딸을 생각하여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다시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가 그 남성을 만나고 연락한 것이 확인되어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등으로 힘들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따뜻한 남성에게 대한 호감을 가진 것에 불과하며 카톡으로 문자만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고, 딸을 생각하여 가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살고 있는데 부부 사이가 평탄하지는 않고 행위자가 매 순간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현재 생활에 계속 그 잣대를 들이대며, 피해자는 행위자의 바람을 수용하기 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활방식을 고집하는 측면이

있어 갈등이 재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 폭력은 없었으며 부부가 서로 경계하는 노력을 하였다.

부부의 결혼 유지 의사가 확고한 것이 강점으로, 상담에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행위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했다. 종결 상담에서 행위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0점, 현재는 10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고 마음속의 분노가 좀 누그러졌음을 보고하였다. 보완점은 피해자에 대한 불신 회복인데 아직 구체적 해법에는 이르지 못한 단계였다. 집단 상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좋았고, 향후 폭력은 다시 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노력해서 잘 살도록 하고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미래 계획을 공유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3회
부부상담 6회 등 16회

상담기간

2021. 11. 9. ~ 2022. 4. 28.

상담경과

부부는 혼인한지 50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 3녀(모두 40대, 딸들은 결혼하고 아들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가 있다. 행위자는 2021년 3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생활비 용도로 준 돈을 포교원에 마음대로 현금하고 종교에 빠져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부딪히게 하였으며, 이를 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윈터 관절 아래 부위를 손으로 세게 누르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부부갈등 원인에 대하여 행위자는 10년 전부터 피해자가 폐휴지 수거일을 한다고 밤늦게 또는 새벽에 귀가하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돈에게 부끄러워 그만두라고 하여도 그만두지 않는 점을 꼽으며 폐휴지 수거일을 그만두기 바랐다. 피해자는 결혼기간 중 행위자로부터 폭언, 폭력을 당하고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한 점을 꼽았으며,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아내인 자신에게는 모질게 대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10년 전부터 폐휴지를 수거하여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버는데 행위자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아 자신이 번 돈으로 병원비와 용돈을 쓰고, 고등학생인 손자 대학 등록금도 대주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못 하게 하려면 폐휴지 수거로 버는 돈을 행위자가 주기 바랐다. 그리고 결혼 기간 50년 동안 총 1천 만 원을 현금한 것이니 문제 삼을 금액은 아니라고 하였다. 부부상담 결과, 피해자는 폐휴지 수거일은 계속하되 시간을 조절하기로 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부부는 합의사항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부간 감정의 골이 깊고 본인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문제행동이 재발 되었다. 그리고 한 집에서 다투고 살기보다 차라리 별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에 대한 숙고도 권하였다.

종결상담시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및 현재 부부관계만족도를 모두 0점으로 평가하고, 행위자의 간섭을 그 이유로 들었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및 현재 부부관계만족도를 모두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평가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행위자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피해자의 뜻을 따르고 살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다짐받았다. 부부가 고령이고 오랜 기간 문제행동에 노출되어 지내온 터여서 상담 종결 이후 갈등 재연이 우려되지만 큰 소리, 폭언, 폭력하지 않을 것을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4년 6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6/20	13명	과정집단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음주문제 집단상담	6/7	3명	음주와 공동의존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14		3명	음주와 회복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6/5	9명	가족화목, 소통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6/12	8명	부부로 산다는 것, 체념과 수용의 차이	
		6/19	11명	소통의 열쇠, 호기심	
		6/26	9명	자기성찰, 다시 가정을 이룬다면	
	동지교실	6/12	31명	널 화라면 멋지게 내자 : 火解하기③(+표현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음주문제 집단상담	6/7	12명	음주와 공동의존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14	9명	음주와 회복		

어떻게 할까요?



부모와 자녀 ① - 친자의 성, 친생자⑤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 하려면 (생부의 경우)

Q 문 11 | 남편의 폭력을 피해 3년 전 집을 나온 여성과 교제하여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출산일 3개월 전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 이후 잦은 다툼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자녀는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제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아직 출생신고 전이라면 자녀의 생부인 귀하가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의2 제1항).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동법 제855조의2). 인지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허가 받은 생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Q 문 12 | 이혼을 앞둔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이를 출산했는데 여자 말로는 제 아이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현재 여자의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 등록부에 올릴 수 없을까요?

A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서울고법 1991. 7. 23. 선고 91르483 제1특별부 판결). 따라서 등록부상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귀하는 그 아이를 인지할 수 없고 귀하의 자녀로 등록시킬 수도 없습니다.

●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친생부인

Q 문 13 | 얼마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3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에게는 두 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부에 제 친아들로 기재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A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자녀의 어머니를 상대로 또는 어머니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9조). 귀하는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아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Q 문 14 | 남동생이 올해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유언서를 써 놓고 사망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언서에 의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6).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만일 남동생이 유언시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동법 제1095조).

● 혼인 외 자가 생부를 등록부에 밝히려면

Q 문 15 | 저는 혼인 외 자로, 친아버지는 저를 큰아버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다른 분과 결혼했습니다. 큰아버지는 10년 전, 큰어머니는 3년 전 사망했고, 저와 친아버지는 계속 왕래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등록부에 부자관계를 밝히기를 꺼립니다. 등록부에 생부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859조 제1항), 인지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동법 제860조).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63조). 등록부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기재되어 있을 때에도 생부와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따라서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생부를 밝히려면

Q 문 16 | 저는 혼인 외 자로 등록부에 어머니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최근 생부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부를 밝힐 수 있는지요?

A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 중에는 출생 후 언제라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따라서 귀하는 생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 사실혼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의 부모를 밝힐 수 있다

Q 문 17 |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백일이 다 된 아이가 있는데 등록부에 아이 아버지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의 부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민법 제864조) 확정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 **아이의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할 경우**

Q 문 18 | 결혼 약속을 하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 아이 아버지가 유부남이었습니다. 저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아이를 인지해 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생부를 등록부에 밝힐 수 있나요?

A 아이 아버지가 자진해서 인지할 의사가 있다면 인지신고를 통해 부를 밝힐 수 있지만(민법 제855조 제1항), 귀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등록부상 생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동법 제863조).

● **인지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의 효력**

Q 문 19 | 저는 유부남인데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의 사이에서 혼인 외 자를 낳았습니다. 아내가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될 것이고 제 체면도 말이 아닐 것 같아 상대방이 아이와 살 수 있는 돈을 일시불로 주고 절대로 인지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인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은 유효한지요?

A 인지청구권은 신분관계상의 권리이고 또 일신전속적인 권이므로 어머니가 한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10 판결). 심지어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고 할지

라도 그 화해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청구권은 혼인 외 자에게 부와 법률상의 친생관계라는 확정을 하고 보호를 기대한 것이므로 다른 신분상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따라서 아이 어머니가 귀하로부터 물질적으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상대방 혹은 그 자녀는 귀하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을 당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직장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돈은 아니지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채무변제에 힘썼으나 경기불황으로 구직이 잘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생활이 여의치 않아 보증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후 보증금이 적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3인의 식구가 13평 남짓한 주택(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서 살고 있



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매일 건설현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25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만으로 3인 가구의 생계비를 부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채무자는 재산이 없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2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하지만 파산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

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조항에 의해 아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5천 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 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 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 500만원

또한,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귀하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인 1,375만원의 재산에 대해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전규선 상담위원



목소리를 드릴게요

정세랑 지음

아작, 2021(초판 10쇄)



“흙 속에 통째로 파묻히다시피 한 재고 창고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재고라는 개념에 충격을 받았다. … 수요를 한참 웃돌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들을 생산했다니 과거의 풍요로움이란 굉장히 기분 나쁜 풍요로움이었다. 이 작은 동물원의 흔적을 찾았을 때는 여러 사람이 토했다. 윤리는 본능적인 비위에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변화하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마음에 남았던 이 구절은 정세랑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 중 「리셋」의 한 부분이다. 거대한 지령이들에 의해 인류가 망한 이후 살아남은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 관해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거대한 지령이들이 인류 문명을 갈아엎는 이야기를 짧게 여러 번 써서 합쳤다. 나는 23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역겨워할까 봐 두렵다. 지금의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의 폭력을 역겨워하듯이 말이다. 문명이 잘못된 경로를 택하는 상황을 조바심 내며 경계하는 것은 SF 작가들의 직업병일지 모르지만, 이 비정상적이고 기분 나쁜 풍요는 최악으로 끝날 것만 같다. 미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경멸하지 않아도 될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8편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집의 이야기는 모두 독창적이고 흥미로웠지만 표제작 「목소리를 드릴게요」와 「리셋」이 내게는 가장 강렬했다.

기후변화 앞에 속수무책인 지구의 전반적인 상황, 팔레스타인 그리고 실내동물원에 7년을 갇혀 살다가 처음 진짜 바람을 맞보는 사자를 보면서 우리는 거대 지령이가 됐든 뭐든 곧 망할 것 같고 그래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오래전 보았던 영화 〈뷰티풀 그린〉(1996)이 떠올랐다. 외계인의 지구 방문기였는데 이전까지 외계, 우주라고 하면 연상했던 금속성이 하나도 없는 외계인 이야기였다. 호수와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축복받은 별 ‘뷰티풀 그린’. 그들은 지구인들보다 200년 앞선 지능과 초능력을 가졌고 지구를 위해 예수와 바하를 파견한 적이 있다. 그들은 물질문명을 거부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며 온갖 공해와 스트레스에 지친 지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 그리고 지구에 파견된 이들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아기를 포옹하는 것이다. 놀랍고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영화였고 정말 가고 싶은 외계 행성, 뷰티풀 그린이었다.

‘뷰티풀 그린’처럼은 못 살더라도 거대 지령이가 갈아엎어야 할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이 된다.

“날카로운 비판조차 곁 곁하게 다듬는” 정세랑의 첫 SF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저자가 쓴 거의 모든 SF 단편을 모은 것으로, 지금 이곳,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몰락해 가는 인류 문명에 관한 경고를 담은 8편의 소설을 수록한 것이다.

작가 정세랑은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다가 장르문학을 쓰기 시작했다. 2014년 『이만큼 가까이』로 창비장편소설상을, 2017년 『피프티 피플』 한국일보문학상을 받았다. 내게는 『보건교사 안은영』(2015), 『시선으로부터』(2020)의 작가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숙현 편집부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이태영홀'로 명명

상담소 창설자이자 법학 교육에도 헌신한
이태영 선생님의 생애와 뜻을 기려

이화여자대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며 상담소 창설자인 이태영 선생님의 뜻을 기려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을 '이태영홀'로 명명하는 '이태영홀 현판식'을 지난 6월 12일 법학관에서 개최했다.

이태영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자 법학박사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통해 여성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화여대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하면서 여성 법학 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교원 의견 수렴과 회의를 거쳐 법학관 405호 모의법정을 이태영홀로 명명해 그 뜻을 기리기로 한 것이다. 모의법정은 미래의 법조인이 될 법전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시연해 볼 수 있는 강의실이어서 최초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선생님을 기념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현판식은 김대인 법전원 교무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찬송과 안선희 교목실장의 기도, 성경봉독에 이어 상담소에서 제작한 '이태영 박사가 걸어온 길' 동영상 시청이 있었으며 김현철 법전원장의 현판식 준비 경과보고, 김은미 총장의 인사말씀 그리고 제자 대표로 신인령 전 총장과 광배희 상담소 소장의 말씀이 있었으며 가족대표로 정대철 대한민국의정회 회장의 감사말씀이 있었다. 이어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 측에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신인령 전 총장, 김선욱 전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본소에서

차명희 이사장과 광배희 소장, 조경애·박소현·이숙현 부장 그리고 그리고 가족으로 정대철 대한민국의정회 회장과 정호준 정일형·이태영박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태영 선생님은 1936년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여전 가사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963년부터 1971년까지는 이화여대 법정대학 교수와 학장을 역임하며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이화여대 법학교육의 기초를 닦았다. 선생님의 헌신에 힘입어 이화여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사진 2면)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률구조 현장 체험교육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5일 동국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현장 체험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에는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와 법학과 학생들(17명)이 방문하여 본소의 법률구조 역사 및 가족법 개정운동사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고 상담소 사진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조은경 상담위원이 본소의 가족법 개정활동과 법률구조 사례에 대해 강의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번 체험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법률구조 실무자 회의

지난 6월 3일 본소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본소의 법률구조를 위한 실무자 회의가 열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등 위탁 사건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법률구조 진행을 위해 양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절차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지원부장장인 부장과 김병철 위원 그리고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 부장과 조은경 상담위원, 김지은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윤곡 이후정 작가 본소에 모바일 아트 회화 기증 상담소 직원으로 인연

상담소 직원으로 일한 바 있는 윤곡 이후정 작가가 귀한 인

연을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 모바일 아트 회화 한 점을 상담소에 기증하였다. 작품은 <장미의 합창> (아트레이지 페인팅, 91cm×89cm)이다.

이후정 작가는 2020년 경인미술관, 2022년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 등에서 열린 사)한국문화예술가협회 회원전에 참가했으며, 3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는 스마트화가, 모바일아티스트로 현재 사)한국모바일아티스트협회 이사, 사)한국문화예술가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모바일 아트는 디지털 기반인 모바일의 그림 앱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린 작품을 활용하는 새로운 예술 창작 방식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

2024년 6월 상담통계

총 건수 4,101

법률상담 (3,432)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1,112	2,216	89	15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13	35	121

· 인터넷 정보 이용 66,924 건

2024년 6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101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43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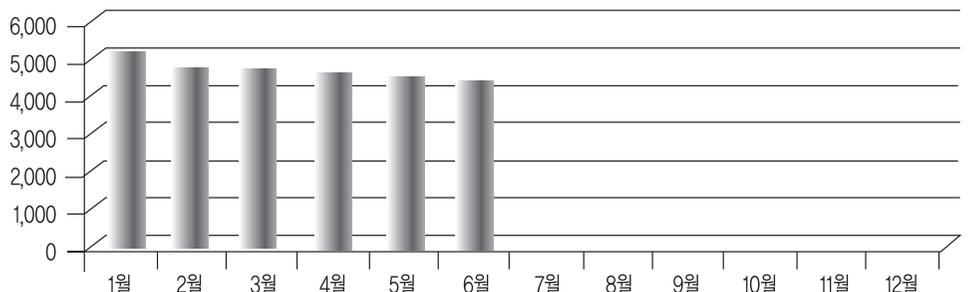
(83.7%), 화해조정 513건(12.5%), 소장 등 서류작성 35건(0.9%), 소송구조 121건(2.9%)이었다.

법률상담 3,432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5월에 비해 부부갈등(2.3%→2.8%), 사실혼해소(0.4%→0.8%), 위자료·재산분할(6.5%→7.1%), 친권·양육권(3.7%→4.6%), 양육비(9.6%→10.9%), 면접교섭권(1.2%→1.4%), 인지(1.4%→1.6%), 친생자존부(1.6%→2.0%), 파혼(0.3%→0.4%), 혼인무효·취소(0.4%→0.7%), 이혼무효·취소(0.0%→0.1%), 유언·상속(7.3%→

8.3%), 미성년후견(1.4%→1.6%), 가사절차(4.2%→4.6%), 임대차(0.2%→0.4%), 민사절차(0.0%→0.2%), 민사기타(0.5%→0.6%), 개인회생(0.1%→0.6%), 성폭력(0.0%→0.1%), 형사절차(0.1%→0.3%), 형사기타(0.7%→0.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432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12건(32.4%), 전화상담 2,216건(64.6%), 인터넷상담 89건(2.6%), 서신상담 15건(0.4%)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6.1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6.19. 강서지역자활센터-생활법률
- 박슬기 변호사

6.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교육
- 김진영 상담위원

6.28. 전국가정폭력협의회 중사자 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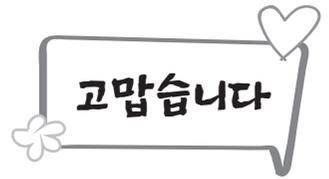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6월 3일 상담소 8층에서 진행된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였다. 12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이태영 홀 현판식에 참석하였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사건을 조정하였다. 21일 김현옥 재무회계과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회의에 참석하였고, 28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6월 12일 이화여자대학교 이태영홀 현판식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

본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6월 1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호리야마 마키코 기자와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정신,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 등에 관해 인터뷰를 했다. 이 내용은 6월 20일 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관련 사진들과 함께 게재되었다.



2024년 6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대학생 자원봉사

김시현, 남계목, 문세원, 이동희, 강태목, 류제빈, 손예린, 이준호, 김현우, 차서연, 김도윤, 신영혜, 이재운, 정민주, 전성희, 최성은, 한승현, 김나현, 이준영, 김미은, 김민재, 김연지, 문다은, 이지민, 한아름, 원서영, 이해원, 조희서, 하유지, 구가연, 임동현, 김유빈, 김지원, 여예령, 차진희, 최민제, 권순호, 김경은, 이지율, 정재경, 길가현, 전서영, 김용평, 노태연, 이재영, 장다원, 고유진, 김경민, 김민서, 김소영, 문정현, 서현진, 김창열, 박진희 님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홍지훈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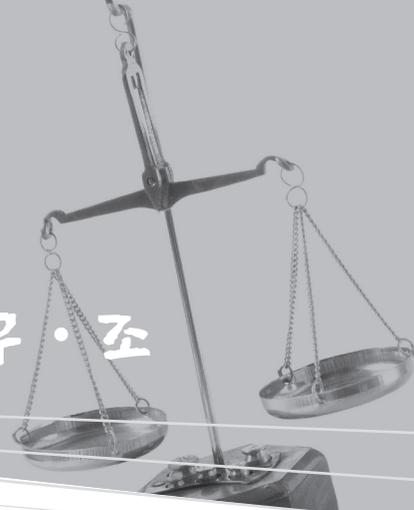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최문원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30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1992년경부터 학원강사를 하였고, 지인과 함께 기숙학원을 개원하면서 학원운영자금이 부족하여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2,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부푼 기대와 달리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자 신청인은 저축은행 두 곳에서 신용대출 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받아 학원 운영비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결국 운영권을 넘기고 소규모 학원을 전전하며 강사를 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학원강사로 일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고령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친족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매월 약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힘겹게 생활 중인 신청인은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5. 29.)

채무자를 면책한다.

식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20년 넘게 별거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4-1-33

담당 : 성수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60대)는 1994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외박이 잦았고, 원고에 대하여 욕설,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 피고는 무직인 상태에서 도박도 하여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로 원고와 갈등을 겪어 오다가 1997년경 원고에게 식칼을 가지고 와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가 무서워 집을 나와 살게 되었고, 현재까지 피고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4. 5.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76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2010.경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사업을 이어가면서 차근차근 원리금을 변제해 나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계모임에 가입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계모임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지만 믿었던 지인이 껌돈을 받고 행적을 감추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음식점 매출이 1년 만에 절

반 이상 급감하였고, 유지가 어려웠던 신청인은 가게를 내놓아야만 했다. 이후 재기를 꿈꾸며 다른 음식점을 개업했지만 역시 장사가 잘되지 않아 권리금조차 챙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사기 피해와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오히려 채무가 증대한 신청인은 상경하여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고질병이던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웠다. 게다가 몇 년 전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완전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신청인은 여러 질병 외에도 불면증을 앓고 있어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이다. 이에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4. 25.)
채무자를 면책한다.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법률구조 2023-1-95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남, 20대)의 모친인 소외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1998.경 피고(남, 50대)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소외인은 탈북 이후 원고의 친생부와 동거하다가 원고를 출산하였다. 원고 출산 이후에서야 원고의 모친인 소외인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12.경 확정되었다. 원고의 모친은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하고 싶었으나 친생부가 아닌 피고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와 친생부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11. 8.)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3-1-153

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0대)는 피고(남, 2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들(여 2명, 2세)을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잦은 음주로 인해 원고와 원고의 모친에게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자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여 원고가 어린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다. 결국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며 지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하루 200통에 가까운 문자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보여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폭력적인 행위들과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 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포함된 2024. 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1. 2024. 1.부터 2024. 7.까지
 - 가.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에서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위 센터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판결 선고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에 면접교섭 신청서를 접수한다.

나. 위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면접교섭 실시 이후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상황, 일정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여 정한다.

2. 2024.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가. 일정

1) 2024. 8.부터 2025. 7.까지

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17:00까지

2) 2025.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일요일 11:00까지(1박 2일)

나) 설과 추석 연휴기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1박 2일

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6박 7일

나. 방법

피고가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와서 피고의 거주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 후 다시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 준다.

다. 협조의무

1)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만나기 늦어도 3일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와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원고와 협의한다.

2)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내에게 건디기 힘든 폭언과 폭행을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3-1-240

담당 : 김선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70대)와 피고(남, 80대)는 1974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여러 차례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원고의 목을 조르며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을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나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친정집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가 친정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면서 각서라도 쓰겠다고 하여 원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함께 아들의 자녀인 손자를 돌보며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며 생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빼돌려 친정을 도와준다는 험한 욕설을 하였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화가 나면 밥상을 집어 던지거나 가재도구를 마구잡이로 부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사람이 좋아하니깐 집에서 나가라'는 등 원고도 모르는 사람 이름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그 놈이 어떤 사람이나고 따지면서 폭행을 하였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손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원고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버렸다. 원고는 그 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피고와 이혼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불행한 혼인 생활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4. 6.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7월 22일, 8월 휴강, 9월 23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4년 8월, 11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8월 22일	과학으로 본 분노
11월 21일	부부대화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4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7월 10일	삶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성격 특성 (+변증법적 행동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월 7일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 (+이야기 치료)	
9월 11일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 초래하는 우울 (+인지행동치료)	
10월 16일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 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4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 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